

【 15 】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11. 22.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양주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양주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 조성(안 제2조)

나.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사회활동 및 지원(안 제3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안 제5조)

라. 군수는 매년 운용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양주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안 제11조)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한 일에 종사하고 社會的 活動 에 참여할 機會를 보장받는다.</p> <p>③老人은 老齡에 따른 心身의 變化를 自覺하여 항상 心身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知識과 經 驗을 活用하여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第3條(家族制度의 유지·발전) 國家 와 國民은 敬老孝親의 美風良俗 에 따른 전진한 家族制度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第4條(福祉增進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老人的 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p> <p>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老人 의 福祉에 관한 施策을 강구함 에 있어서 第2條에 規定된 基 本理念이 具現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p> <p>③老人의 日常生活에 관련되는 事業을 경영하는 者는 그 事業을 경영함에 있어서老人의 福祉가 增進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第5條(老人福祉對策委員會) ①老 人福祉對策에 관한 國務總理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下에 老人福祉對策委員會 를 둔다.</p> <p>②老人福祉對策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p>	<p>제2조(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한다.</p> <p>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p>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양주군 공고 제316호

양주군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10월 16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양주군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제정취지

양주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양주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운용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정함(안 제3조)

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되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하여 1997년

부터 2001년까지 5억원을 조성토록 함(안제 2조, 4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되도록

함. (안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점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조: 가정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49-1343)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양주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서 정한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3. 대한노인회 경기도지부 양주군지회 및 각급회(분회, 경로당, 노인교실 등) 지도육성
4.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운영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 노인의 건강 취미생활 사업 운영
7.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등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은 1997년에는 5천만원을,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1억원씩을, 최종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각각 적립하여, 총 5억원이 조성되는 2002년

부터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④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양주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지부 양주군지회장이 되며, 양주군의 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과 대한노인회경기도지부양주군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한다.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계 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업무를 총괄 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해촉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때
2.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때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한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영계획)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부군수

2.분임기금운용관 : 가정복지과장

3.기금출납원 : 가정복지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중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으로 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2월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지방재정법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결산 결과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양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